

# 예산총칙

2020년도 최종추경 이후 통합간주 1 차 ~ 4 차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8,617,355	20,358,521
일반회계	659,372,524	19,781,176
특별회계	19,244,831	577,345
기타특별회계	19,244,831	577,34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19,374	21,581
주차장 특별회계	10,704,737	321,142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070,041	32,101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361,844	10,855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98,177	11,945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5,990,658	179,72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405,882천원(일반예비비 4,024,685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7,381,19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20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3,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2020년 제4회 추경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부되는 국시비보조금(구비부담분 포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 기부금 등은 예산의결(명시이월 승인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한다.

※ 예산서 재원표기

[국] 국고보조금, [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금

[특] 특별교부세, [별] 특별조정교부금, [시] 시비보조금, [구] 자체재원